

##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8.20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# 1. 제안이유

- . 식품위생법의 개정(2000. 7. 13)으로 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동법 위반으로 군수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자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 : 2,850,000원(2000년7월13이후)
- 조성방법 :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
- 기금의 용도
  -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
  - 명예감시원 활동비
  -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
  -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

### 3. 의결요청(안) : 덧 붙임

##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

### 1. 기금의 조성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계원	조성액	기금관리 방법	예치금융 기관	비고
2000년도	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	2,850	보통예금	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	

### 2. 기금의 조성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조성액	관리계획
계	2,850	
기조성 (2,850)	2,850	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

### 3. 기금의 사용계획

기금의 용도

-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
-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
- 위해식품 등 보상금
-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

□ 사용계획

-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방지 간담회  
- 10,000원 × 14명 × 3회 = 420,000원
-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참석보상  
- 10,000원 × 10명 × 2회 = 200,000원
-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비  
- 80,000원 × 5개소 = 400,000원
-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
- 35,000원 × 5명 × 6회 = 1,050,000원
-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수당  
- 30,000원 × 3명 × 2회 = 180,000원
- 심야업소 합동단속여비  
- 10,000원 × 3명 × 20일 = 600,000원